#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6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 이해민·차규근·박은정

황운하 · 서왕진 · 신장식

김준형 · 강경숙 · 조 국

정춘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5조).

### 법률 제 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하고, 같은 조 중 "방송통신의"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수입금"을 "차입금과 수입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용도"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방송통신"을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 및 제3호 중 "관련"을 각각 "또는 정보통신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활성화"를 "또는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6.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각각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 업무"로 한다.

제4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

른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제47호를 삭제한다.

②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 발전기금"으로 한다.

- ③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7항 및 제30조제5호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각각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각각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⑥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⑦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 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 발전기금"으로 한다.

⑩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제5항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며,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을 하고, 제66조의3제2항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제2항에 따른 징수금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이하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또는 수입으로 한다.
-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9조 중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각각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⑥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 발전기금"으로 한다.

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또는 「정보통신안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u>방송통신발전기금</u>	제4장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
제24조( <u>방송통신발전기금</u> 의 설치)	제24조(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	설치)
송통신위원회는 <u>방송통신의</u> 진	<u>방송통신</u>
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u>방송통</u>	과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 진
<u>신발전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	흥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
다)을 설치한다.	<u>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u>
	<u>정보통신방</u>
	<u>송발전기금</u>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6
는 수입금	<u>차입금과 수입금</u>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u>사업</u> 에 사용된다.	<u></u> .
1. <u>방송통신</u> 에 관한 연구개발	1. <u>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u>
사업	
2. 방송통신 <u>관련</u> 표준의 개발,	2 <u>또는 정보통신 관</u>
제정 및 보급 사업	<u> 권</u>

- 3. 방송통신 <u>관련</u> 인력 양성 사 업
- 4. 방송통신서비스 <u>활성화</u>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 략) <신 설>

-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 ④ (생 략)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저

   (생 략)
  -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u>방송통신</u> 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3또는 정보통신 관
<u> 권</u>
4또는 정보통
<u>신산업(「정보통신산업 진흥</u>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
<u> ই</u>
5. ~ 15. (현행과 같음)
16.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
<u>환</u>
<u>17.</u> <u>과학기술정보통신</u>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
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Ⅱ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2
<u>정보통신</u>
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 명한다.

- ④ <u>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u>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⑤ (생략)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생략)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저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생 략) <u><신 설></u>

<u>,</u>
④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
<u>심의회</u>
⑤ (현행과 같음)
6
<u>「전파법」 제66조제1항</u>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원, 그 밖에 방송통신 또는 정
보통신 업무
⑦ (현행과 같음)
세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탁

	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